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08
----------	-------

발의연월일 : 2026. 5. 11.

발 의 자 : 이해민 · 김선민 · 이훈기
이학영 · 조인철 · 민병덕
정춘생 · 이정문 · 신장식
김준형 · 강경숙 · 황운하
안도걸 · 손명수 · 서왕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